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5·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수익사업 승인 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제출서류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한편, 현행 유효기간 연장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어 현행 법령상 승인철회·승인취소 사유에 대해서만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수익사업”을 “사업계획서(수익사업”으로, “서류”를 “서류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서류”를 “서류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각 단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”를 “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서류”를 “서류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각 단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

기준 충족 여부”를 “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”로, “위하여”를 “위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2.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9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 또는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

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2호서식 중 “시행규칙 제33조제5항·제34조제6항”을 “시행규칙 제33조제5항·제34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익사업 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전화번호
	사무소 소재지	
신청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
	사업장 소재지	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- 사업계획서(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를 포함합니다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-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에 따른 각 단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(같은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- 그 밖에 수익사업의 승인과 관련하여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- 사업자등록증명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- 토지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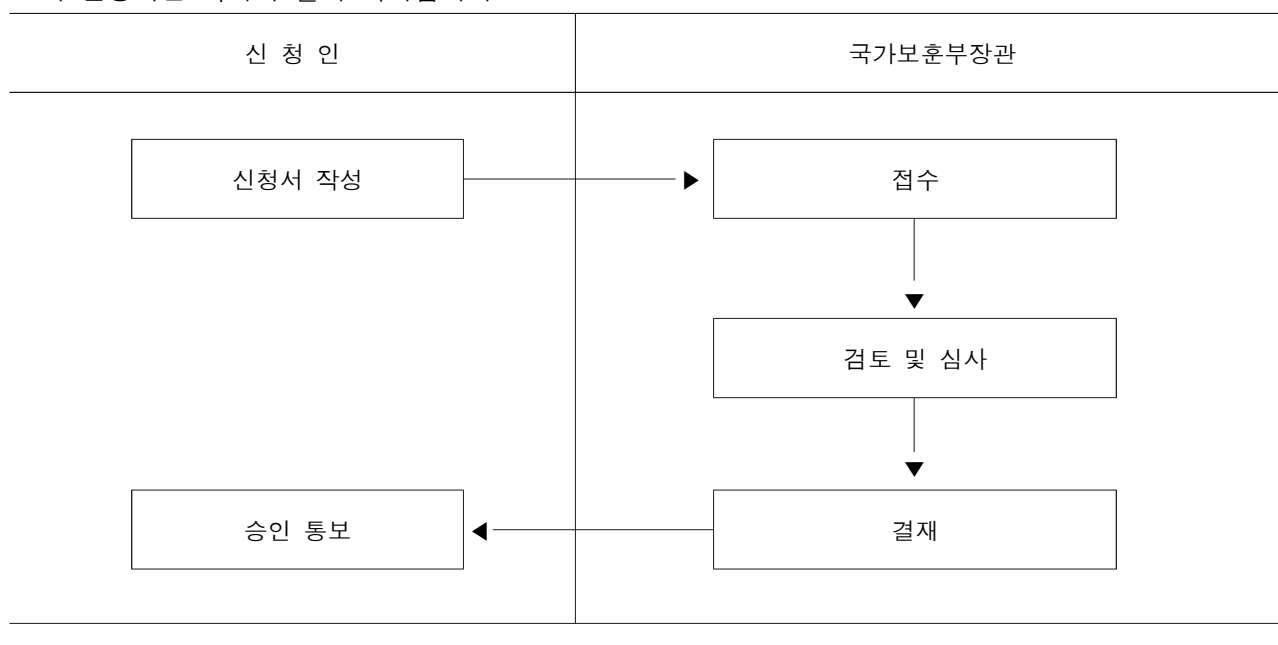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	전화번호	
	사무소 소재지		
신청내용	종전 수익사업 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수익사업 승인서
		발급일	발급번호
	변경 내용 및 그 사유	사업장 소재지	
		변경 내용	
		변경 사유	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- 사업 변경계획서(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-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에 따른 각 단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 수행자 지정서(같은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-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(수익금의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-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- 사업자등록증명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- 토지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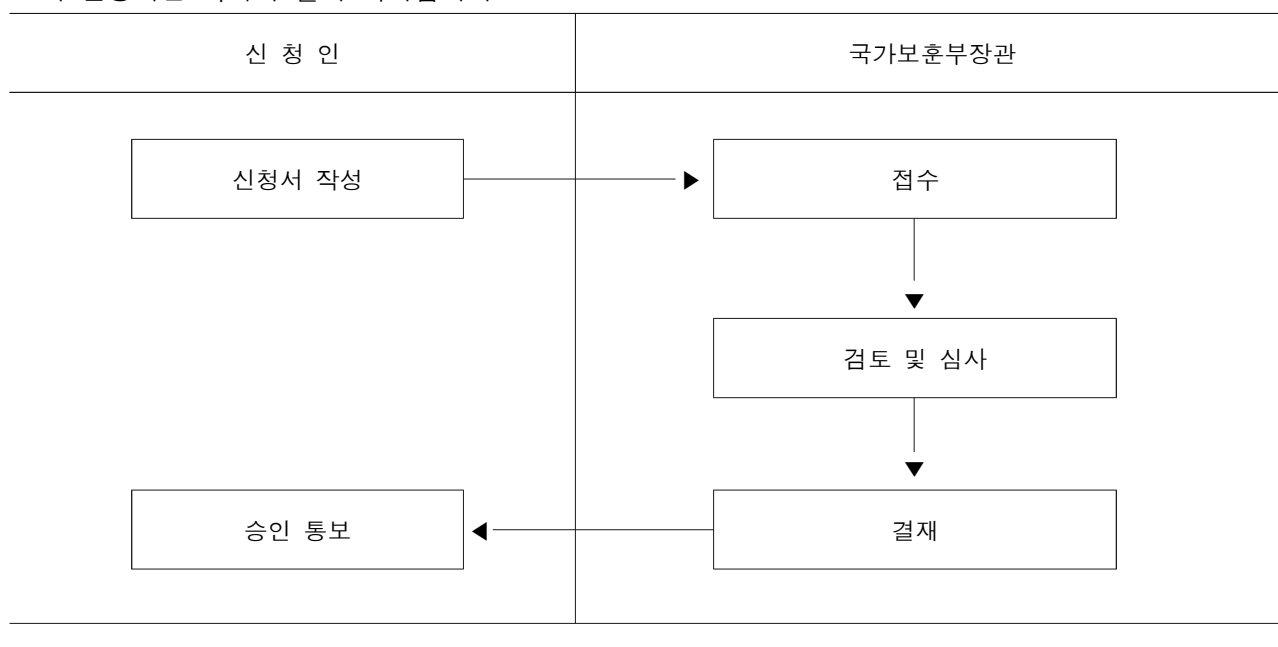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	전화번호	
	사무소 소재지		
신청내용	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 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수익사업 승인서
		발급일	발급번호
	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그 사유	사업장 소재지	
		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	
		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	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2.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에 따른 각 단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) 3. 그 밖에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 2.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. 토지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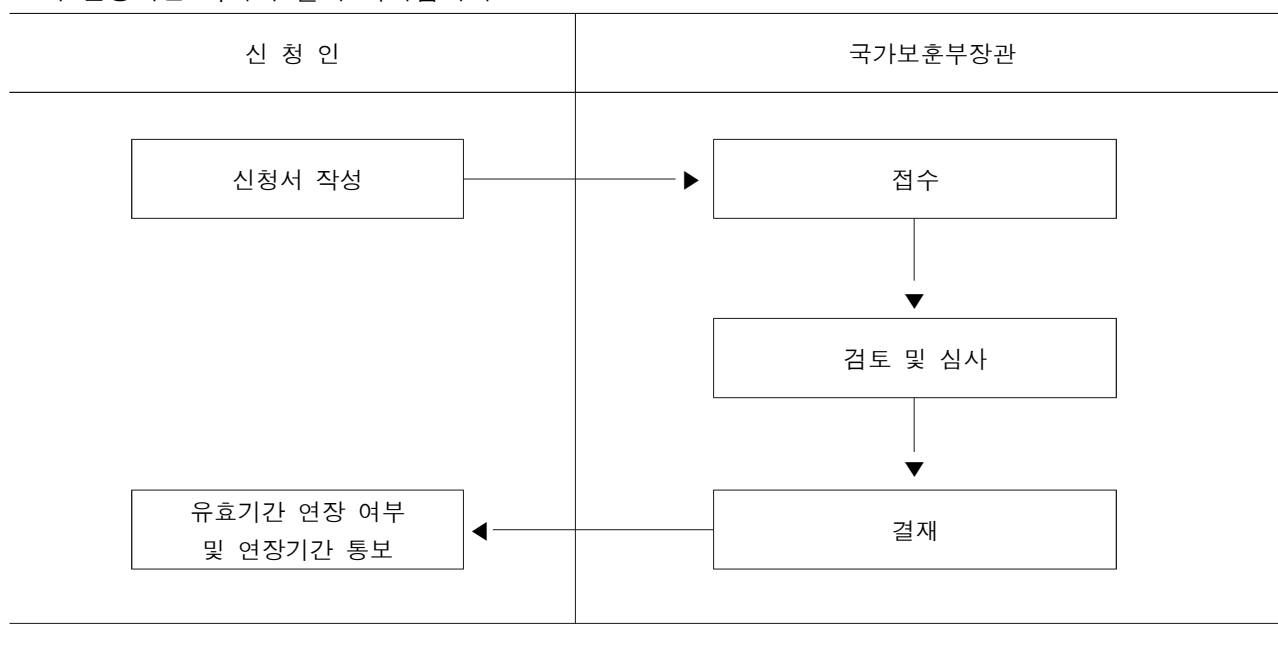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)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33조(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<u>사업계획서</u>	<u><삭 제>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<u>서류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류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각 단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)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
5.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
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

6. 그 밖에 수익사업의 승인과
관련하여 법 제66조제3항 및
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
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
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
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
구하는 서류

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
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
는 각 단체는 별지 제40호서식
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
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
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
한다.

1. 2. (생략)

3.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
· 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
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
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
음을 증명하는 서류

1. 사업계획서(수익사업-----
-- 서류를 포함한다)

5. -----
--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
인하기 위하여 -----

② 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서류(담당 공무원
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
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
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
있는 사업자등록증명, 건물등

4. ~ 6. (생략) ③ ~ ⑤ (생략) 제34조(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)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(생략) 2. 그 밖에 <u>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</u>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.	<u>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, 각 단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)</u>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34조(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</u> ----- <u>위해</u>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

1. (생략) 2. <u>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</u> 3. <u>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</u> 4. <u>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</u> ③ <u>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(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)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</u>	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9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 또는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--	--

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④ · ⑤ (생략)

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단체에 통보해야 하고,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.

⑦ (생략)

③ · ④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⑤ ----- 제4항-----

-----.

⑥ (현행 제7항과 같음)